

일본공간 윤리 규정

1. 목적

본 규정은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학술지 『일본공간』의 발간에 있어서 연구자, 편집위원,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,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, 연구부정 행위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2. 연구부정행위의 정의

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, 수행,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, 변조, 표절, 중복 게재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‘위조’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.
- (2) ‘변조’는 연구의 자료, 장비,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, 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(3) ‘표절’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,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(4) ‘중복게재’는 연구자 본인의 이미 출간된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논문을 인용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(5) ‘부당한 논문저자 표시’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,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(6)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,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.
- (7)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.

3. 연구자

- (1) 연구자는 독창성 있는 논문을 작성하고, 위조·변조·표절·중복게재 등의 부정행위를

하지 않는다.

- (2)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.
- (3) 연구자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
4. 편집위원

- (1)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진다.
- (2) 편집위원은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.
- (3)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.
- (4) 편집위원은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논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된다.

5. 심사위원

- (1)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를 의뢰한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- (2)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심될 경우에 심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이를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(3)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,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 되기 전까지 논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.
- (4)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이 본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.

6. 윤리위원회

(1) 구성

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
(2) 역할

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.

(3) 운영

-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한다.
-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본 연구소 소장에게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- ③ 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를 알린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④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.
- ⑤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(4) 징계 및 사후관리

- ①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, 본 연구소 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- ②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경고, 본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 목록 삭제, 논문투고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7. 부칙

(1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에 따른다.

(2)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